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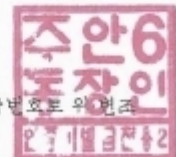


(1 / 1)

발급번호		납세증명서			처리기간		
T593-811-				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
납 세 자	상호(법인명)				사업자 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박				주민등록번호	*****
	주소(본점)	경기도 양주시 *****					
증명서 사용목적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 타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번호 제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확인일 년 월 일					
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의 내역 (단위: 원)							
유예종류	유예기간	과세기간	세목	납부기한	세액	가산금	
	해	당	없	음			
<p>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정수유예액 또는 채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1. 증명서 유효기간 : 2018년 7월 04일 2.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()</p>							
접수번호	100203461238						
담당부서	민원봉사실						
담당자							
연락처	032-770-0229						
				2018년 6월 4일			
				인천세무서장			


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장



* 본 증명서 발급은 www.hometax.go.kr의 「민원증명」 서비스에 「민원증명 발급신청」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십시오.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간만 가능하며, 과료발급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.

* 본 증명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,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본 증명은 대리인(최미래)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입니다.